# 스타트업 리걸클리닉

- 제14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021. 6. 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김 성 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1호 제정법안 벤처투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별도의 영역으로 인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 방식을 정비, 민간의 벤처캐피탈과 개인의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 I.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 정(특정사건 발생)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
- 예시 : 최초 8억원을 투자하면서, 후속 투자가치의 80%로 지분을 배분받는 계약 체결 → 100억원 기업가치로 추가투자 유치시 80% 가치로 인정받아 10% 지분 확보
-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
-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주 주 전원의 동의를 통해 발행





##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SAFE <주식전환가 결정방식>

가치평가상한 (Valuation cap)

투자대상 기업가치의 상한선 할인율 (Discount rate)

SAFE에서 주식 전환 시 VC 투자단가 대비 할인 율





#### SAFE CASE

#### <A사 스타트업 X에 SAFE 투자 1억 원>

◆ 가치평가상한액 50억 원 / 할인율 20%

#### <스타트업 X VC B사로부터 후속투자 유치 >

- 100억 원의 투자시점 기업가치(pre-money value)로 10억 원을 투자
- 벤처캐피탈 투자단가=기업가치/발행주식수=100억원/10만주=10만원
- 벤처캐피탈 취득주식수=투자액/투자단가=10억원/10만원=1만주

<박용린, 천창민, "한국형 SAFE 도입의 경제적 의의와 법적 쟁점" 이슈보고서 18-10, 자본시장연구원, 7면 참조>





#### SAFE CASE

#### (1) 가치평가상한만 있는 경우

SAFE 투자단가=벤처캐피탈 투자단가×min(1, 가치평가상한/벤처캐피탈투자시점 기업가치)=10만원×min(1, 50/100)=5만원 SAFE 취득주식수=SAFE 투자액/SAFE 투자단가=1억원/5만원=2,000주

#### (2) 할인율만 있는 경우

SAFE 투자단가=벤처캐피탈 투자단가×(1-할인률)=10만원×(1-0.2)=8만원 SAFE 취득주식수=SAFE 투자액/SAFE 투자단가=1억원/8만원=1,250주

#### (3) 가치평가상한과 할인율 모두 존재하는 경우

SAFE 투자자 투자단가=min((1)경우의 SAFE 투자단가, (2)경우의 SAFE투자단가)=min(5만원, 8만원)=5만원 SAFE 취득주식수=SAFE 투자액/SAFE 투자단가=1억원/5만원=2,000주

<박용린, 천창민, "한국형 SAFE 도입의 경제적 의의와 법적 쟁점" 이슈보고서 18-10, 자본시장연구원, 7면 참조>





## II. 벤처투자 제도의 변화





###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도 통합>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투자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

중소기업창업법	벤처기업법		
창투사, <u>창업투자조합,</u>	모태펀드, <u>벤처투자조합</u>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인투자자,	창업	창업	<u>벤처투자</u>	모태펀드,		
개인투자조합	기획자	투자회사	<u>조합</u>	한국벤처투자		





### 2. 벤처투자조합 결성주체 확대

창업초기기업 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u>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u> 대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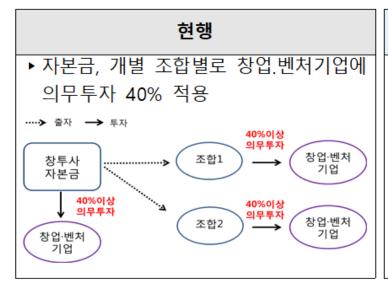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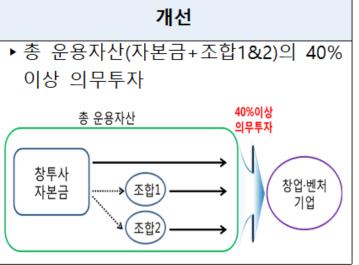
현재 자본금과 개별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를 운용중인 총자산(자본금+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 기준으로 유연하게 변경하여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조정









#### 4. 전문개인 투자자 등록제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재의 전문엔젤확인제도를 개편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제를 도입함

#### 5. 손실보전 금지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손실보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감사합니다.

